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64
----------	-------

발의연월일 : 2022. 4. 14.

발 의 자 : 김예지 · 박완수 · 이주환

김용판 · 김선교 · 이종성

김승수 · 유정주 · 이달곤

류호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n번방 성착취 사건과 홍신소를 통한 스토킹범죄 살인 사건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공무원 등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행위가 존재하였음.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와 이로 인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제70조의2로 하고, 제10장에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1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의2 전단 중 “제70조”를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부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1.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u> <u>2.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u>
<u>제70조(벌칙) (생략)</u>	<u>제70조의2(벌칙) (현행 제70조와 같음)</u>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6. (생략)	제71조(벌칙) ----- ----- ----- -----. 1. ~ 4의6. (현행과 같음)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삭 제>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삭 제>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
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
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의2(몰수·추징 등) 제70조
 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
 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
 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
 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
 여 과할 수 있다.

제74조의2(몰수·추징 등)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